

---

##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운영비 가이드라인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1) 보수 : 당해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급여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도록 시설에 지도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적립금의 지급 대상 아님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대체휴무 권장

○ 경력인정

-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 및 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 경력 일부 인정 가능

①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80%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제한 없음(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6.1.1.부터 적용*)
50%	법령에서 채용이 의무화된 자격·면허는 아니나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시설당 1명(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8.1.1.부터 적용*) 단, '생산 및 판매기사'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1명 이상 인정 가능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유사경력 인정 대상	인정 인원
8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제한 없음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1.1.1.부터 적용*)

- 그 외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음

○ 기타 행정사항

- 그 외 지급대상, 호봉 확정 및 승급·승진 등에 관한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을 준수할 것
-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2)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시설이 4대보험 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함
  -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건강보험료 부담금	$\text{보수월액} \times 7.19\% \times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text{건강보험료}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text{건강보험료율}(7.19\%)) \times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부담금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9.5\% \times 1/2$ (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법 제88조 및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4.2.)제4조 참조)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text{임금총액} \times 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고용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월급여총액 $\times 1.8\% \times 1/2$ * '22.7월 이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료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관련기관 확인필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 ※ 2021년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3) 유급병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단,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
  -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나.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25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 또는 시설별로 자체 운영중인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본 내용을 근거로 종전에 비해 유급병가의 기간·조건 등이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 ※ 유급병가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시설별 개별 지침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1.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 관리기사	간호사 영양사	시설관리 기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선임	일반					
1호봉	2,980,600	2,683,200	2,580,100	2,477,200	2,477,200	2,477,200	2,477,200	2,281,800	2,197,000
2호봉	3,082,400	2,769,600	2,654,000	2,538,600	2,538,600	2,538,600	2,538,600	2,324,300	2,222,100
3호봉	3,186,800	2,870,500	2,738,200	2,606,200	2,606,200	2,606,200	2,606,200	2,366,500	2,261,100
4호봉	3,305,300	2,973,900	2,843,000	2,712,200	2,712,200	2,712,200	2,712,200	2,411,500	2,302,700
5호봉	3,440,900	3,095,900	2,960,100	2,824,500	2,824,500	2,824,500	2,824,500	2,475,400	2,343,500
6호봉	3,582,800	3,221,100	3,080,600	2,940,500	2,940,500	2,940,500	2,940,500	2,538,700	2,396,200
7호봉	3,724,600	3,345,900	3,203,600	3,061,500	3,061,500	3,061,500	3,061,500	2,633,500	2,435,800
8호봉	3,871,200	3,489,100	3,336,000	3,183,000	3,183,000	3,183,000	3,183,000	2,737,600	2,500,200
9호봉	4,018,900	3,637,600	3,469,300	3,301,000	3,301,000	3,301,000	3,301,000	2,835,500	2,579,300
10호봉	4,159,300	3,778,200	3,602,400	3,426,800	3,426,800	3,426,800	3,426,800	2,921,200	2,667,700
11호봉	4,310,200	3,915,700	3,729,300	3,542,900	3,542,900	3,542,900	3,542,900	2,997,200	2,736,000
12호봉	4,437,500	4,027,400	3,837,500	3,647,900	3,647,900	3,647,900	3,647,900	3,062,600	2,802,700
13호봉	4,556,000	4,132,400	3,935,900	3,739,600	3,739,600	3,739,600	3,739,600	3,125,400	2,872,800
14호봉	4,652,800	4,231,300	4,029,900	3,828,600	3,828,600	3,828,600	3,828,600	3,189,500	2,925,900
15호봉	4,750,300	4,326,700	4,120,300	3,914,000	3,914,000	3,914,000	3,914,000	3,255,800	2,972,100
16호봉	4,842,600	4,402,200	4,198,300	3,994,600	3,994,600	3,994,600	3,994,600	3,328,000	3,018,100
17호봉	4,929,200	4,481,600	4,276,500	4,071,400	4,071,400	4,071,400	4,071,400	3,399,600	3,076,100
18호봉	5,011,100	4,561,200	4,353,600	4,146,100	4,146,100	4,146,100	4,146,100	3,467,900	3,132,500
19호봉	5,087,700	4,632,100	4,422,000	4,212,000	4,212,000	4,212,000	4,212,000	3,529,400	3,192,200
20호봉	5,156,000	4,700,700	4,489,300	4,277,800	4,277,800	4,277,800	4,277,800	3,589,300	3,242,500
21호봉	5,223,300	4,767,900	4,553,200	4,338,700	4,338,700	4,338,700	4,338,700	3,643,100	3,299,100
22호봉	5,287,900	4,829,900	4,613,700	4,397,700	4,397,700	4,397,700	4,397,700	3,697,400	3,364,200
23호봉	5,348,200	4,888,800	4,671,100	4,453,600	4,453,600	4,453,600	4,453,600	3,747,100	3,428,600
24호봉	5,404,900	4,943,900	4,723,400	4,502,900	4,502,900	4,502,900	4,502,900	3,796,000	3,492,000
25호봉	5,460,400	4,998,800	4,775,200	4,551,900	4,551,900	4,551,900	4,551,900	3,842,500	3,555,900
26호봉	5,505,800	5,046,700	4,823,100	4,599,700	4,599,700	4,599,700	4,599,700	3,885,100	3,615,100
27호봉	5,552,100	5,091,700	4,865,800	4,640,000	4,640,000	4,640,000	4,640,000	3,921,800	3,664,400
28호봉	5,592,400	5,132,200	4,906,400	4,680,800	4,680,800	4,680,800	4,680,800	3,957,900	3,701,100
29호봉	5,623,300	5,166,100	4,942,200	4,718,300	4,718,300	4,718,300	4,718,300	3,992,800	3,739,500
30호봉	5,649,300	5,202,100	4,977,700	4,753,400	4,753,400	4,753,400	4,753,400	4,025,800	3,773,500
31호봉	—	5,235,300	5,010,000	4,785,000	4,785,000	4,785,000	4,785,000	4,057,900	3,799,800

\* '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선임직업훈련교사 '25년 대비 3.5% 증액)

2.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이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함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 이의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